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내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우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있어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목적을 같이 하면서도 각각의 특별회계와 조례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와 특별회계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95. 5. 9일자 내무부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개선 지침에 의한 준칙(안)이 시달 되었기도 합니다.

본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되는 기존 2개의 조례에서 용자대상, 용자한도, 자금운영, 관리등에 있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2개의 조례와 특별회계를 하나로 하는 제정 조례로서 내용상 기존의 조례와 크게

벗어나는 특이점은 없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수정시킨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제1호 행상 다음에 "노점"을 삭제 시키고 부칙 제1조 시행일 다음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제1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에 "구미시"를 삽입시키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다음에 "구미시"를 삽입하였으며,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2개의 특별회계를 하나로 하고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하는 통합 조례로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